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1. 6.



Q CONTENTS

I — 개요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참여 주체별 역할 2
3. 사업 운용 2
4. 사업 추진 체계 3

II — 지원 대상 5

1. 지원 대상 사업주 5
2. 지원 제외 사업주 8

III — 지원 요건 13

1. 기업 요건 13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14

IV — 지원 내용 19

1. 지원 한도 19
2. 지원 수준 19
3. 지급기간 및 주기 20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21

V —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지급 23

1. 장려금 지급 신청 23
2. 장려금 지급 25

VI —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9

1. 지도 및 점검 29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30
3.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사항 33

VII — 시행일 및 경과규정 33

■ 참 고

- (참고1)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37
- (참고2) 주요 질의응답 사례 40

■ 서 식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45
 - * (붙임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47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48
 - * (붙임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9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 통지서 50

■ 별 첨

1. 성장유망업종 범위 53
2. 지식서비스산업 64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목록 69
4. 벤처기업확인서(양식) 71
5. 지원제외(소비·향락업 등 업종) 7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가능)

* 사행·유흥업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기업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전년 연평균 대비)

③ (신청기한 준수) 채용 후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수준)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 月 75만원×1년 (연 최대 900만원)

□ 신청 및 접수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 지원절차



I 개 요



1 목적 및 추진근거

1-1 목 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1-2 추진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 및 제2항

-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1-3 해석 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음

2 참여 주체별 역할

2-1 고용노동부 본부

- ① 동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 ②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 ③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인식 확산 및 제도 홍보
- ④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부정수급 조사부서)

- ① 사업의 홍보 및 대상 사업장 발굴
- ② 장려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장려금 지급
- ③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 ④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2-3 사업주

- ①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장려금 수령
- ②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2-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전산망 관리·운영

3 사업 운용

- 사업 시행 기간 중 총 지원인원 9만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체계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지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

① 사업공고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② 청년 실업자 : 사업주
신규채용 - 청년 신규 채용



③ 지원금 신청 : 사업주
- 6개월 단위 신청
① 장려금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④ 장려금 지급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지도·점검
- 요건 충족 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업기간 중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사업주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⑤ 평가 및 사후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관리



II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사업주

1-1 전년도 연평균('21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 「고용보험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상용근로자에 국한)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예 시

1. 20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인 **2019년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2. 2019.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2019.5월부터 2019.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
 3. 20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2020.5월부터 2020.11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
 4. 20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0.11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5. 2020.12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1.1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0.12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 ※ 고용보험 성립월에 채용된 청년은 장려금 신청 대상 아님
6. 202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1.5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1.1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참고)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과 확인방법

- ❖ 매출액은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의 3개년의 평균 매출액으로 확인 가능하며, 결산일은 '중견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보면 알 수 있음
- ※ 아래 내용은 단순 예시이며, 확인서 유효기간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필히 확인 요망
- * (예시1) '20.10.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01.~'21.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9.12.31.임
→ 따라서, '19~'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예시2) '21.3.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0.04.01.~ '21.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19.12.31.임
→ 따라서, '19~'17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예시3) '21.5.1.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의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1.04.01.~ '22.3.31.이라면 동 기업의 결산일은 '20.12월임
→ 따라서 '20~'18년 사이의 매출액을 보면 됨
- * (참고)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결산월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이며, 확인서는 유효기간 이내에만 발급 가능
- (예시) '19. 12. 31. 결산 → 유효기간 '20. 04. 01. ~ '21. 03. 31.
'20. 03. 31. 결산 → 유효기간 '20. 07. 01. ~ '21. 06. 30.
'20. 06. 30. 결산 → 유효기간 '20. 10. 01. ~ '21. 09. 30.

1-2

다만, 전년도 연평균('21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기업의 경우에는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 세부 기준은 5p. 예시 참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① 성장유망업종 (별첨 1)
 -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별첨 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확인(업종 코드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② 지식서비스산업 (별첨 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3)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 (별첨 4)’로 입증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 지원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1-3

위 1-1, 1-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에 참여 가능

- 2021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0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 2020.12월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9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1-4

위 1-1, 1-2, 1-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업주이더라도, ‘21년 중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참여 가능

- 단, 1-3, 1-4 요건이 동시 충족되는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1-3(전년도 말일 기준)을 우선 적용

예 시

1. '20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4명인 기업이 '21.1월말 피보험자 수가 6명이 된 경우, '21.2월부터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 전체 인원이 6명보다 증가할 경우 지원 가능
2. '20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4명, '20.12월말 피보험자수가 6명, '21.1월말 피보험자수가 5명인 경우는 '20.12월말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신규 추가 채용 여부 판단

1-5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최초로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두번째, 세번째 채용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 시

1.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12월, '21.1월, '21.2월에 각각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할 경우 적용 되는 피보험자 수(이 경우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수 증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21.1월 '21.2월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피보험자 수를 적용
※ '21.1월, '21.2월 채용 청년에 대해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 '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0.11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이고, '20.12월, '21.1월, '21.8월에 각각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에는, '20.11월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청년 3명에 대해 지원 여부 판단
3. '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21.1월, '21.2월, '21.12월 각각 청년을 1명씩 채용한 경우, '20.5월부터 '20.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청년 3명에 대해 지원 여부 판단

2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별첨5」 지원제외(소비·향락업 등 업종) 참조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④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매년 인사혁신처장 고시)
-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 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⑦ 정부·지자체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관

2-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불가

2-4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사업주)

- * '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 (확인 방법) 사업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21.2.10. 고용노동부에서 공표(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1-65호)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사업 참여 제한
-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2-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 (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사업주)

2-8 관련 사업주 등(이하에서 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

- 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 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②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III

지원 요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

기업 요건

1-1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①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 전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5p. 예시 참조)
- ② 다만,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미만)” 기업에서,
 - ‘20년 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도 말일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거나,
 - ‘21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예 시

‘20년 연평균 및 연말 피보험자수가 4명인 기업이 ‘21.2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5명(기업요건 충족)이 되고, ‘21.3월 이후로 청년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 피보험자 수(6명)를 증가시킨 경우 추가채용 1명에 대해 지원 가능

- ③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여부는 매월 단위(해당 월의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로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 (IV.3. 참조)

**1-2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함**

- ①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기준 피보험자 수*'와 '청년 신규채용인원' 등을 합한 수로,
 - * 청년 '신규' 채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로 '21년 전 성립기업은 '20년 (연)평균, '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기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등
 -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 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②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유지 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이후 매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비교·판단
 - 기업이 동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은 장려금 지급이 중단

◆ 청년 채용 이후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행정처리 예시

'20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6명인 기업이 '21.2월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1.2월말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8명이 된 이후, '21.5월 대상 청년 이외 다른 근로자 퇴사로 '21.5월말 기준으로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7명인 된 경우

⇒ '21.5월에 대한 지원은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 6명보다 증가한 1명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의 입사일이 빠른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청년이 있을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지급. 이 경우, 해당 월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다른 월에 대한 장려금은 지급이 가능하며, 추가 6개월 고용유지 후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2**신규채용 청년 요건****2-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야 함**

- ① '20.12.1. ~ '21.12.31에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기간제 신규 채용 청년은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 불문하고 지원 대상 아님)
 - * 다만,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만 청년연령을 연장(최고 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되 수습 기간을 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요건 심사

- ② ①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중인 청년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동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적용

2-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주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 예를 들어, '21.2.23. 채용자의 경우 '21.2.23.부터 '21.8.22.까지 해당.

2-3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대상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에 대해서 추가 6개월의 고용유지 후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대상 청년에 대해 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청년이 1년 이상 근속하여 2회차 장려금 신청한 경우에도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2회차 지원대상에서도 제외

2-4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5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2-6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③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④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대학 재학생이 아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업은 지원 대상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지원 신청 시 제출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 2/3 출석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기업은 해당 학교로부터 2/3 출석확인서 등을 받아 지원 신청 시 제출

- ⑥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⑦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⑧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⑨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
- ⑩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⑪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Ⅱ. 지원대상 -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V 지원 내용



1 지원 한도

1-1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예 시

'20.12월부터 '21.12.월 기간 중 채용된 청년 중 기업당 3명까지 지원

- ① '20.12월, '21.1월, '21.5월 채용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21.11월에 채용한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
- ② '20.12월 채용한 청년 3명에 대해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21.4월에 신규로 채용한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 불가
- ③ '20.12월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해당 청년이 퇴사하였다면, 1명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

2 지원 수준

2-1 지원 금액

- ① 지원대상 청년의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원 인원 × 월 75만원”을 지원함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최저임금>
- ('20년) 1,795,310원, ('21년) 1,822,480원

* 지원 인원은 '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판단

- ①-2 다만,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 채용된 경우, 근로자의 결근, 중도 퇴사 등 사정으로 근로일수가 적어 수령한 임금이 월 계약 임금 보다 적은 월에는 해당 월 지원액(75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② 지원신청 개별근로자별로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매월 단위로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3 지급기간 및 주기

3-1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 충족하면, 1회차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1년 고용 유지 후 전체근로자수 증가 요건 충족하면 2회차 장려금 지급

-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한 후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예시) '21.1.1. 입사하여 '21.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1회차 장려금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장려금은 지원 불가

3-2 매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예 시

1. '21.1.1 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1~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6개월 단위 1회차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21.1.15 채용한 A청년을 대상으로 1~7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분(월력 기준으로는 7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고용센터에 6개월 단위 1회차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21.1.1 채용한 A청년에 대해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동 청년을 대상으로 7~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2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6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2회차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21.1.15 채용한 A청년에 대해 1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동 청년을 대상으로 '21.7~'22.1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2회차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6개월분(월력 기준으로는 7개월분) 임금을 지급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2회차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방관서에서는 각 해당 채용 청년의 회차별(6개월, 1년) 고용 유지 및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

4 지원인원 산정 및 판단기준

4-1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 수 확인을 통해 지원 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존 피보험자 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 인원 수 만큼 지원

예 시

1. '20년 연평균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청년을 2명 채용한 후 '21.4.15. 청년 중 1명이 퇴사하여 '21.4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1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1명분 장려금 지원 가능
2. '20년 연평균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0명인 기업이 '21.1.15. 청년을 3명 채용하였으나, '21.7.20. 지원대상 청년 3명이 퇴사하고, 같은 날 청년이 아닌 장년 근로자가 3명이 입사하여 '21.7월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수가 23명이 된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청년 3명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3. '21.1.14.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21.1.14.부터 '21.7.13.까지 고용유지하고, '21.1월 부터 '21.7월말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가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 하였다면 '21.2월부터 '21.6월까지의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인 '75만원×5개월', '21.1.14.부터 '21.1.31.까지의 일할 계산 지원금, '21.7.1.부터 '21.7.13.까지의 일할 계산 지원금을 합산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4.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1회차 지급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2회차 장려금을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청년근로자의 월 중간 퇴사로 월말 기준 근로자 증가가 없으면 일할 계산 하지 않고, 월말 근로자 증가가 있으면 일할 계산

4-2 장려금 지급시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현황 및 청년 신규채용 등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요건 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장려금 “부지급”



V

장려금 지급 신청 및 지급



1

장려금 지급 신청

1-1

신청 시기

① 지급 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상기의 합리적인 경우라 함은 하나의 법인일지라도

지(점)사에서 독립적으로 ① 해당근로자와 지(점)사의 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채용·해고 등에 인사권한을 가지고, ②수익의 주체가 지점으로 귀속되며,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등 인사·노무·회계 등이 사실상 분리된 경우에 한함

② 6개월 단위 신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회차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1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2회차 장려금(6개월분)에 해당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③ 지급신청서는 온라인(www.ei.go.kr)으로도 제출 가능

1-2 구비 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사업주 확인서 등

1-3 서류 보완 및 반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신청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준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장려금 지급

2-1 지급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함

※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피보험자 수 확인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1회 14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2 지급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상의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법인 사업장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지급 가능')

2-3 중복 지원 제한

- ① 이 사업과 다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름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중복 지급 가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2. 제24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3. 제25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5.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7.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8.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9.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 ③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으면 그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만을 지급한다.
- ⑥ 근로자가 제28조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이 지침에 따른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2-4 고용보험료 체납시 장려금 부지급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VI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1-1 목 적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의 적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도,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 예방 및 적발

1-2 수행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1-3 지도·점검 주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의 명부, 고용안정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함

1-4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 ② 위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1-5 조사 등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② 이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2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2-1 근거 법령('20.8.28. 시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함

2-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2-3 지급제한

- ①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한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 가능

2-4 추가징수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제재처분(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제재처분에 따른 추가징수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2-5 형사처벌('20.8.28. 시행)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 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3. 삭제 <2020. 8. 28.>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영 제5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73호 서식의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한다.

3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법 시행일('20.8.28) 이후에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가능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VII

시행일 및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지침은 '2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circle in the center containing the text '참 고'. To the right of the circle are two small triangles. Below the circle is a horizontal line. Further down is a list of two items. Below the list is another horizontal line.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are two small triangles and a large curved shap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large curved shape with several small dots inside it. The top right corner has a pattern of diagonal lines.

참 고

1.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2. 주요 질의응답 사례



참고1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청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을지로2가) 을지 한국빌딩 9층	02-2004-7371, 7373, 7394~5, 7910~17377, 7379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2~5, 4977~9, 4922, 4940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10 금강타워10층	02-3468-4703, 4708~9, 471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5층,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도화동, 삼창프라자)	02-2077-6002, 6003~5, 6025, 6030, 6034, 6065, 3410, 3422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9층	02-2639-2187, 2403, 2411, 2413, 2330, 2333, 2162, 2435, 2499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0, 2층(상계동, 현대증권빌딩)	02-2171-1833, 1861, 1800, 1802~5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4길27대륭포스트타워3차2층	02-3282-9249, 9353, 9361, 9366, 9379, 9384~5, 9388~9, 9393, 9396
중부청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층 504호 기업지원과	032-460-4672~81, 4641, 4691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032-540-5731~3, 5745~7
	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시 서구 서곶로 299, 10층 기업지원팀(서구청 제2청사)	032-540-2051~3
	부천지청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부천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5
	부천지청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9층 기업지원팀	031-999-0339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사: 센터 길 건너편 남정씨티프라자7차 4층, 기업지원팀)	031-920-3957, 3964, 3981, 3988, 3997~8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가능2동 754) 기업지원팀	031-828-0838, 0813, 0893, 0831~4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삼성생명, 별관)	031-231-7864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	031-739-3170~3, 3122, 4916, 4991, 3178, 3160, 3163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031-463-0761~4, 0767, 0769, 3803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안 산 지 청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고잔동,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0~5, 6948, 6914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031-646-1205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033-250-1924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176(고동) 강릉고용센터 1층	033-610-1918
	강릉지청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속초고용센터	033-630-1909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2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45
	태백지청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4층	033-570-1910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영월고용복지+센터(2층)	033-374-6254
부산청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부산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과	051-860-2072, 2100, 1931, 1923~1927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5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별관7층 기업지원팀	051-760-7244~7, 7288, 7210, 7249, 7282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51-330-9970~2, 9945, 9952, 9955, 9986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센터 8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38(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052-228-1922, 1923, 1926, 1942~3, 3909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김해고용복지+센터 4층	055-330-6434~6, 6444
	양산지청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5-760-6751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55-650-1811~3
대구청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대구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06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0~6, 6477, 6479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	053-605-9518, 9519
	대구서부지청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054-970-1906, 1907
	포항지청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경주고용복지+센터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32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5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구미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440-3360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변영로 88 (휴천동) 2층	054-639-1132
	영주지청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054-559-8231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안 동 지 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광주청	광 주 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500
	광 주 청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062-960-3201, 3202, 3203
	전 주 지 청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전주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10
	전 주 지 청	남원고용센터	남원시 향단로 39 남원고용복지+센터	063-630-3915
	전 주 지 청	정읍고용센터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정읍고용복지+센터	063-530-7501
	익 산 지 청	익산고용센터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23
	익 산 지 청	김제고용센터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군 산 지 청	군산고용센터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3-450-0634
	여 수 지 청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061-720-9164
	여 수 지 청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061-650-0155
	여 수 지 청	광양고용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061-798-1909
	목 포 지 청	목포고용센터	전남목포시평화로5번지 4층	061-280-0541~2, 0564
	목 포 지 청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061-530-2912, 2905
대전청	대 전 청	대전고용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042-480-6000
	대 전 청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공주고용센터(신관동)	041-851-8507
	대 전 청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61
	대 전 청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번지 2층	044-861-8992~3
	청 주 지 청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층	043-229-0704~9
	천 안 지 청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041-620-7400
	충 주 지 청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충 주 지 청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043-640-9322
	보 령 지 청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55
	서 산 출 장 소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41-661-5603, 5614, 5664
제주	제 주 고용센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064-710-4462

참고2 주요 질의응답 사례

Q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준 피보험자 수가 여러 개로 보이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입니다. 즉, 청년을 '20.12월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로, '21년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과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다소 세분화되는 것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 본 지침 해당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20.12월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같은 달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4.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포함되는 것인가요?

☞ 동 사업에서 의미하는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해당됩니다.

Q5.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1.15.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7.14.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2.1.14.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Q6.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 없는 것인가요?

☞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 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할 경우, '20.12월 임금은 '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1.1월부터의 임금은 '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 1,795,310원, '21년 기준 1,822,480원 이상의 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 만근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청년의 경우에는, '20년 기준 1,344,335원, '21년 기준 1,364,680원 이상의 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 만근 기준)

Q7. 기업당 지원한도가 3명까지라고 하는데, 기업규모에 상관 없이 3명인 것인가요?

☞ 네.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기업당 3명의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지원합니다.

Q8.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지만, 수습 기간을 둔 경우, 최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동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6개월분의 지원금이 지급 되는 것인가요?

☞ 채용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2회차 장려금을 위해서는 1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 6개월분의 지원금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해당 개월분에 대해서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기업이 '21.1.1. 청년을 1명 신규 채용 하였는데, '21.3.13. 기존 근로자 1명이 퇴사하고 '21.4.5. 새로운 근로자 1명이 입사하였을 경우, 월말 피보험자 수가 6명인 '21.1월, '21.2월, '21.4월, '21.5월, '21.6월 총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10. 장려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을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1년)이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는 것은 지원 제외됩니다.

즉, '21.1.15. 채용된 청년의 경우, 1회차 장려금 신청 시기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1.7.14.이 속한 7월의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1.2.15.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였을 경우라면, '21.8.14.이 속한 8월의 다음 달인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건이 중복되는 신청 기간인 9월부터 10월 사이에 두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1개의 신청서에 작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Q1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중인 청년을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동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서 식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결정 통지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중견기업 해당 여부 ^①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여부 ^②				□ 해당 □ 비해당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 ^③ (2021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등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 최초 채용월부터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기입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해당 월말 전체 피보험자수										
(명)		신청인원 (지원대상 청년수)												
3. 신청 내용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현황 () 명														
연 번	회사 구분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전환)일 (년 월 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 ^⑤			청년다자팀, 청년일경험 참여자 여부						
				월별 임금 총액(원)(세전 기준)										
1	□ 1회사 □ 2회사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2	□ 1회사 □ 2회사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3	□ 1회사 □ 2회사			년 월 일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장려금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4. 통장사본 5. 사업주 확인서 등 입증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작성 요령>

※ 동 작성 요령에 없는 사항은 시행지침 해당 파트에서 확인

- ① 중견기업 해당 여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면 해당란에 체크
- ②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에 해당하면 체크
- ③ 직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20.12월에 장려금 신청 대상인 청년을 최초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청년과 이후 채용하는 청년 모두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며, 2021년에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인 20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임

(예시)

- 2019.12월말 이전 고용보험이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19년 연 평균 피보험자 수임
- 2020.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1.1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2월에 1명, 2021.3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월 부터 2020.12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임
- 2020.5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5월 부터 2020.11월까지의 매 월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임
- 2020.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0.12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1월에 1명, 2021.2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1월 말 피보험자 수임
- 2020.12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2021.1월 최초로 청년을 채용하고, 2021.2월에 1명, 2021.3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하였을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는 3명의 청년 모두 2020.12월 말 피보험자 수를 기입
- 2021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된 사업장의 기준 피보험자 수는 고용보험 관계 성립월 말 피보험자 수임

④ 회차 구분

: (1회차)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 (2회차) 1회차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중인지 여부를 해당 란에 체크

※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

■ [붙임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 장려금 지원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대상자 성명			
1. 채용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참여자만 전환일 기재		(채용일) 20 년 월 일 (전환일) 20 년 월 일	
☐ 사업장 요건			예 아니오
1. 청년 최초 신규 채용월의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21년도 고용보험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2. 우선지원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3.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의 채용 전 1년 이내 관련 사업주가 아닙니다. ※ 지침 p10 2-8 참조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이 아닙니다. ※ 지침 p10 2-5 참조			
6. 최근 1년간 임금체불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사업주)이 아닙니다. ※ 지침 p10 2-4 참조			
7.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근로자 채용 등 조건으로 금전적 지원(인건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참조			
☐ 근로자 요건(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입니다.			
3.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당시 재학생(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 (년 월 일) * 확인자료 첨부 제출			
5.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7. 신청 대상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자가 아닙니다.			
8. 신청대상 근로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로 등록된 근로자가 아닙니다.			
9.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10. 신청대상 근로자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11. 신청대상 근로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기타			
1. 사업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신청 시 동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확 인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본인 확인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주민등록번호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 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 이력	참여 적격요건 확인	

2.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장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		명	원	
신청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3.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		명	원	
신청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장려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 첨

1. 성장유망업종 범위
2. 지식서비스산업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목록
4. 벤처기업확인서(양식)
5. 지원제외(소비·향락업 등 업종)



별첨 1 성장유망업종 범위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2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3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4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5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6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7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8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9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10	03212	내수면 양식 어업
11	05100	석탄 광업
12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3	06200	비철금속 광업
14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6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7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8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9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0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1	11202	생수 생산업
22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3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4	13213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25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26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7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8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9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30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1	17110	펄프 제조업
32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33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4	18119	기타 인쇄업
35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36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37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8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39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40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41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42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43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44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45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46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47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48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49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50	20321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51	20322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52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3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54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55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56	20423	화장품 제조업
57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58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59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60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61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62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63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64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65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66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7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8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69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70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71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72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3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4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5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76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7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78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79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80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1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82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3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84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85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86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87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8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89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0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1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92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93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94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95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96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97	23992	연마재 제조업
98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99	23994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100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101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2	24112	제강업
103	24113	합금철 제조업
104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105	24132	강관 제조업
106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연결구류 제조업
107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108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09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0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1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2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3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114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115	24312	강주물 주조업
116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117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18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119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20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121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122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123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24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125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126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7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28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129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130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31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32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33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4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5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36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137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138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139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140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141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2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143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44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145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146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147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48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49	26310	컴퓨터 제조업
150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151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52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153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154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5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156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157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58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159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60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161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162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163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164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165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166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67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68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69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0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71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72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73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74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175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176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177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78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9	28112	변압기 제조업
180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81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2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183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84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185	28202	축전지 제조업
186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187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88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189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90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91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192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93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194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95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196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197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98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199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00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01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02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03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04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05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06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07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08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09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210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11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12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13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14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15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16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17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18	29221	전자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19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20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21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22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23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24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25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6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27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28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29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30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31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32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33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34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235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36	30331	자동차용 부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37	30332	자동차용 부품 전기장치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38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39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40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41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42	31111	강선 건조업
243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244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45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46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47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248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49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50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51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52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53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254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55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56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257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58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59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60	35111	원자력 발전업
261	35112	수력 발전업
262	35113	화력 발전업
263	35114	태양력 발전업
264	35119	기타 발전업
265	35120	송전 및 배전업
266	35130	전기 판매업
267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68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69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270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71	37011	하수 처리업
272	37012	폐수 처리업
273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274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275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6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277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78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79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80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281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282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83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84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85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86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87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288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89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290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291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292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293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294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95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96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297	46109	상품 종합중개업
298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299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300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301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302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303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304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305	47111	백화점
306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07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308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309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310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311	49401	택배업
312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313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314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315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316	50130	기타 해상 운송업
317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18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319	52101	일반 창고업
320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321	52103	농산물 창고업
322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323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24	58112	만화 출판업
325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326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7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8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9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0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2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3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334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35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36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337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338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339	60100	라디오 방송업
340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41	60222	유선방송업
342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43	61210	유선통신업
344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345	61291	통신 재판매업
346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347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48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349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350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351	63111	자료 처리업
352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53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54	63910	뉴스 제공업
355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356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357	64121	국내은행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58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359	64912	개발금융기관
360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361	64919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362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363	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364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365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366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367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368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369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370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371	71310	광고 대행업
372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373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374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375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76	71531	경영컨설팅업
377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378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379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0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1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82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383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384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385	72924	지도제작업
386	73202	제품 디자인업
387	73203	시각 디자인업
388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389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90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391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392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393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94	75994	포장 및 충전업
395	76110	자동차 임대업
396	76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397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98	76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399	76291	서적 임대업
400	76292	의류 임대업
401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402	76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403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04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405	76400	무형 재산권 임대업
406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407	84213	환경 행정
408	84405	소방서
409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410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411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412	85709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413	86101	종합병원
414	86102	일반병원
415	86103	치과병원
416	86104	한방병원
417	86105	요양병원
418	86201	일반의원
419	86202	치과의원
420	86203	한의원
421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422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423	86901	앰불런스 서비스업
424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425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426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427	90191	공연 기획업
428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429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430	95110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제1항]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4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6	46104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7	46105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8	46106	기계 및 장비 중개업
9	46107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10	46109	상품 종합 중개업
11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12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13	46203	사료 도매업
14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15	46205	육지 동물 및 애완 동물 도매업
16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17	46311	과실류 도매업
18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19	46313	육류 도매업
20	46314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21	4631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22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23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24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25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26	46324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27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28	46326	조미료 도매업
29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30	46331	주류 도매업
31	46332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32	46333	담배 도매업
33	46411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34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35	46413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36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37	46415	속옷 및 잠옷 도매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8	46416	가족 및 모피 제품 도매업
39	46417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40	46419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41	46420	신발 도매업
42	46431	생활용 가구 도매업
43	46432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4	46433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 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
45	46439	기타 비전기식 생활용 기기 및 가구 도매업
46	46441	의약품 도매업
47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48	46443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49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50	46451	생활용 포장 및 위생용품, 봉투 및 유사 제품 도매업
51	46452	문구용품, 회화용품, 사무용품 도매업
52	4645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
53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4	46462	악기 도매업
55	46463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56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7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58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59	46492	시계 및 귀금속 제품 도매업
60	46493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61	46499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62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63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64	46522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65	46531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6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7	46533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8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9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70	46592	의료 기기 도매업
71	46593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
72	46594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73	46595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74	46596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75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76	46611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77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78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79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80	46622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81	46691	도료 도매업
82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83	46699	그 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84	46711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85	46712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86	46713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87	46721	1차 금속제품 도매업
88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89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90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91	46733	플라스틱 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92	46739	기타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93	46741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94	46742	직물 도매업
95	46750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96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97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98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99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100	58111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101	58112	만화 출판업
102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103	58121	신문 발행업
104	58122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05	58123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106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107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8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9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0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1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12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13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14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115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116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17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18	61210	유선 통신업
119	61220	무선 및 위성 통신업
120	61291	통신 재판매업
121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122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23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24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125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126	63111	자료 처리업
127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28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129	63910	뉴스 제공업
130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31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132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33	70112	농림수산물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134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35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136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137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138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139	7020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140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41	71101	변호사업
142	71102	변리사업
143	71103	법무사업
144	7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145	71201	공인회계사업
146	71202	세무사업
147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148	71310	광고 대행업
149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150	71392	광고 매체 판매업
151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152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153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154	71531	경영 컨설팅업
155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156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157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58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59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60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161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162	72921	측량업
163	72922	제도업
164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165	72924	지도 제작업
166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167	73202	제품 디자인업
168	73203	시각 디자인업
169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170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71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72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173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4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75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176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177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178	75993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179	75994	포장 및 충전업
180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81	85661	운전학원
182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183	86101	종합병원
184	86102	일반병원
185	86103	치과병원
186	86104	한방병원
187	86105	요양병원
188	86201	일반의원
189	86202	치과의원
190	86203	한의원
191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192	86901	앰불런스 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193	86902	유사 의료업
194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별첨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목록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1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4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5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6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7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8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9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10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1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12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13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4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15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16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7	28112	변압기 제조업
18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9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0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1	28202	축전기 제조업
22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3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4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5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6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7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8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연번	업종코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명
29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30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1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2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3	35112	수력 발전업
34	35113	화력 발전업
35	35114	태양력 발전업
36	35119	기타 발전업
37	35120	송전 및 배전업
38	35130	전기 판매업
39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40	37012	폐수 처리업
41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42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43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44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5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46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47	41225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48	4220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49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50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51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52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3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4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5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6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별첨 4 벤처기업확인서

제 호

벤처기업확인서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확인유형 :

평가기관 :

유효기간 :

위 업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인

210mm×297mm(특수용지 110g/m²)

별첨 5 **지원제외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구분	내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구분	내용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营业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营业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